

[별지]



특별 보상 규정

본 약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한국어판입니다.

본 약관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일본어 원문이 우선됩니다.

[별지]

특별 보상 규정

제 1 장 보상금 등의 지급

제 1 조

(당사의 보상 책임)

1.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참가중에 갑자스럽고 우연적인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라한다)에 의해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때, 본 제 1 장에서 제 4 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사망 보상금, 후유 장애 보상금, 입원 및 통원 위로금 (이하 「보상금등」이라한다)을 지급합니다.
2. 전 항의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유독 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우연적이며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또는 섭취하여 급격히 나타나는 중독 증상(지속적인 흡입, 흡수 또는 섭취등으로 인한 중독 증상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단 세균성 식중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이란, 여행 약관의 모집형 기획여행 약관 제 2 조 제 1 항 및 주문형 기획여행 약관 제 2 조 제 1 항에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2.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 참가중」이란, 여행자가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목적으로 해당 기획여행 일정에서 당사가 미리 준비한 승차권등에 정해진 최초의 교통 숙박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 개시일 부터 마지막 교통, 숙박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 완료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여행자가 정해진 기획여행 일정에서 이탈하는 경우, 이탈 및 복귀 예정일을 사전에 당사에 통보한 경우, 이탈시 부터 복귀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기획여행 참가중」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여행자가 당사에 사전 통보없이 또는 복귀의 예정없이 이탈한 경우, 이탈시부터 복귀시 까지의 기간 또는 이탈이후는 「기획여행 참가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획여행 일정에 여행자가 당사가 준비한 교통, 숙박시설등의 서비스를 일절 제공받지 않는 날(여행지의 표준시간 기준)이 정해져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과 해당일에 여행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등에 관해서 이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위로금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일은 「기획여행 참가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전 항의 「서비스 제공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를 말합니다.
 - (1) 여행 인솔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를 실시할 경우는 접수 완료시
 - (2) 앞의 접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초의 교통 숙박시설 등이:
 - (a) 항공편의 경우는, 승객의 기내 휴대 수하물 검사 완료시
 - (b) 선박편의 경우는, 승선 수속 완료시
 - (c) 철도편의 경우는, 승차권의 개찰후 또는 개찰이 없는 경우는 승차시
 - (d) 차량편의 경우는, 승차시
 - (e) 숙박시설의 경우는, 해당 시설에 입장시
 - (f) 숙박시설 이외의 시설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이용 수속 완료시

4. 제 2 항의 「서비스 제공 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를 말합니다.
 - (1) 여행 인솔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산을 통보했을 때
 - (2) 앞의 해산 통보가 없을 경우, 마지막 교통 숙박시설 등이:
 - (a) 항공편의 경우는, 승객만이 출입할수 있는 비행장 구내에서 퇴장시
 - (b) 선박편의 경우는, 하선시
 - (c) 철도편의 경우는, 승차권의 개찰후 또는 개찰이 없는 경우는 하차시
 - (d) 차량편의 경우는, 하차시
 - (e) 숙박시설의 경우는, 해당 시설을 퇴장시
 - (f) 숙박시설 이외의 시설의 경우는, 해당 시설을 퇴장시

제 2 장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 3 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1)

1.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여행자의 고의. 단,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사망 보상금 수익자의 고의. 단, 해당자가 사망보상금의 일부 수익자일 경우에는, 그이외의 수익자가 보상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여행자의 자살 행위, 범죄 행위, 투쟁 행위. 단,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여행자가 무면허, 또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단,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5) 여행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고 또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생긴 사고. 단,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6) 여행자의 뇌질환, 질별 또는 심신상실. 단,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7) 여행자의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또는 외과 수술 그외 의료처치. 단,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8) 여행자의 형벌 집행 또는 구속, 수감중에 생긴 사고.
-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 반란 그외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 (이 규정에 있어서 군중 또는 집단 행위로 인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이 평온이 깨지고 치안 유지상 중대한 사태로 간주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외 유해한 특성 또는 특성에 의한 사고.
- (11) 앞 두 항목에 수반하여 생긴 사고 또는 여기에 동반한 질서 혼란으로 인한 사고.
- (12) 상기 (10)에서 언급 한 것 이외의 방사선 또는 방사성 오염.

2. 당사는 원인여하를 막론하고, 외상성 경부증후군(편타성 손상) 또는 허리 통증으로 다른 증상이 없을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2)

당사는, 일본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에 있어서, 전 조의 규정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지진, 화산 폭발 또는 해일
- (2) 앞 항목에 수반하여 생긴 사고 또는 질서 혼란으로 인한 사고.

제 5 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1.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당사가 미리 정한 기획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여행 일정외의 기획여행 참가중에 아래 해당사유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여행자가 별표 제 1 에 정해진 운동중에 생긴 상해.
- (2) 여행자가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모터보드에 의한 경기, 경쟁, 행사 (연습 포함) 및 시운전 (성능 기능을 목적으로 한 운전 또는 조정) 중에 발생한 상해. 단,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중에 생긴 상해는 기획여행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3) 여행자가 항공 운성 업체가 운항하는 항공기 (정기편, 비정기편 상관없이) 이외의 항공기를 조정중에 발생한 상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4)

2.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 수익자가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자가 사망보상금의 일부 수익자일 경우에는, 그이외의 수익자가 보상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조직 폭력단, 폭력단원 및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그외 반사회적 세력 (이하 「반사회적 세력」 이라한다)으로 인정될때
- (2) 반사회적 세력에게 자금등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등 관여가 인정될때.
-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히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될때.
- (4) 그외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관계라고 인정될때.

제 3 장 보상금등의 종류 및 지급액

제 6 조

(사망 보상금 지급)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 인하여, 사고일로 부터 180 이내에 사망한 경우 여행자 1 인당, 해외여행을 목적으로한 기획여행은 2500 만엔, 일본 국내여행을 목적으로한 기획여행은 1500 만엔(이하 「보상금액」 이라한다)을 사망 보상금으로 여행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해당 여행자에게 이미 후유장애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보상금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 7 조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1.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 인하여, 사고일로 부터 180 이내에 후유장애 (회복이 힘든 기능의 중증장애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 및 그 원인의 부상이 완치한 후를 말합니다.)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여행자 1 인당 보상 금액에 별표 제 2 의 각호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후유장애 보상금으로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전 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여행자가 사고일로 부터 180 일을 넘기고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경우는, 당사는 사고일에서 180 일째까지의 전문의의 진단을 기준으로 후유장애의 정도를 인정하고, 후유장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별표 제 2 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직업, 연령, 사회적 지위등 관계없이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또한 별표 제 2 의 각호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애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단, 별표 제 2 의 1(3), 1(4), 2(3), 4(4) 및 5(2) 의 기능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후유장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동일 사고에 의해 두가지 종류이상의 후유장애가 나타난 경우, 당사는 그 각각에 대해 전 3 항을 적용되며 그 합계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별표 제 2 의 7, 8 및 9 에 규정하는 상체(팔과 손) 또는 하체 (다리와 발)의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한 쪽당 보상 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5. 전 각항에 준하여 당사가 지급해야 할 후유장애 보상 금액은 여행자 1 인당 1 건의 기획여행의 보상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8 조

(입원 위로금)

1.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 인하여, 업무또는 일상 생활을 할수없어서 입원(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자택에서의 치료 곤란으로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항상 전문의의 관리하에 두고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한 경우는, 그 일수 (이하 「입원일수」 라한다)에 대해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입원 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 (1)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a) 입원일수 180 일 이상의 상해	40 만엔
(b) 입원일수 90 일 이상 180 일 미만의 상해	20 만엔
(c) 입원일수 7 일 이상 90 일 미만의 상해	10 만엔
(d) 입원일수 7 일 미만의 상해	4 만엔
 - (2) 일본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a) 입원일수 180 일 이상의 상해	20 만엔
(b) 입원일수 90 일 이상 180 일 미만의 상해	10 만엔
(c) 입원일수 7 일 이상 90 일 미만의 상해	5 만엔

(d) 입원일수 7 일 미만의 상해

2 만엔

2. 여행자가 입원하지 않아도 별표 제 3 의 각호 중에 해당하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은 경우는 그 기간에 대해서 전 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입원일수로 간주합니다.
3. 당사는 여행자 1 인당 입원 위로금과 사망 보상금, 또는 입원 위로금과 후유장애 보상금을 중복지급할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9 조

(통원 위로금)

1.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 인하여, 업무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통원(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것(왕진도 포함)을 말합니다.)한 경우는, 그 일수 (이하 「통원일수」라한다)가 3 일이상의 통원일수에 대해서 아래의 구분에 따라 통원 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 (1)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 (a) 입원일수 90 일 이상의 상해 10 만엔
 - (b) 입원일수 7 일 이상 90 일 미만의 상해 5 만엔
 - (c) 입원일수 3 일 이상 7 일 미만의 상해 2 만엔
 - (2) 일본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 (a) 입원일수 90 일 이상의 상해 5 만엔
 - (b) 입원일수 7 일 이상 90 일 미만의 상해 2 만 5 천엔
 - (c) 입원일수 3 일 이상 7 일 미만의 상해 1 만엔
2. 여행자가 통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깁스를 한 결과, 업무와 일상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겼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전 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통원일수로 간주합니다.
3. 당사는 업무 종사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상해가 나온 이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일로 부터 180 일을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여행자 1 인당 통원 위로금과 사망 보상금, 또는 통원 위로금과 후유장애 보상금을 중복지급할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10 조

(입원 위로금 및 통원 위로금 지급에 관한 특별 조항)

당사는 여행자 1 인당 입원일수 및 통원일수가 각각 1 일 이상일 경우, 전 3 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로금중 금액이 큰쪽 (금액이 같을 경우는 제 1 호에 해당)만 지급합니다.

- (1) 해당 입원일수에 대해 당사가 지급해야 할 입원 위로금
- (2) 해당 통원일수(당사가 입원 위로금 지급중 기간은 제외)에 해당 입원일수를 합한 일수를 통원일수로 간주하고, 해당 일수에 대해 당사가 지급해야할 통원 위로금

제 11 조

(사망의 추정)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후 30 일을 경과해도 여행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날을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에 의해 사망한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2 조

(다른 신체 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

여행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체 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 또는 제 1 조의 상해의 원인적 사고와 관계없이 생긴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인해 제 1 조의 상해가 심해진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기 전의 상태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제 4 장 사고 발생 및 보상금 등의 청구 수속

제 13 조

(상해의 정도등에 관한 설명 요청)

1.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었을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 수익자에게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여행자의 진단 또는 사체 검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 수익자는 이러한 요청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 수익자는 당사가 관여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제 1 조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등에 대해서 사고일로 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 수익자가 당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 2 항의 규정을 위반, 또는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보상금등의 청구)

1.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 수익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받고자 할시에는, 당사 소정의 보상금 청구서 및 아래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망 보상금 청구의 경우
 - (a) 여행자의 호적등본과 법정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
 - (b)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 (c) 여행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2) 후유장애 보상금 청구의 경우
 - (a) 여행자의 인감증명서
 - (b)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 (c) 후유장애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3) 입원 위로금 청구의 경우
 - (a)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 (b)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c) 입원일수 또는 통원일수가 기재된 병원 또는 진단서의 증명서류
 - (4) 통원 위로금 청구의 경우
 - (a)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 (b)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c) 입원일수 또는 통원일수가 기재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2. 당사는 전 항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 또는 전 항의 제출서류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 수익자가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대위 변제)

당사가 보상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여행자 또는 그 상속인이 여행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된 제 3 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당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 5 장 휴대품 손해 배상

제 16 조

(당사의 배상 책임)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기획여행 참가중에 우연적 사고에 의해 휴대품(이하 「보상 대상품」이라한다)에 손해를 입은 경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휴대품 손해 배상금(이하 「손해 배상금」이라한다)을 지급합니다.

제 17 조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1)

1.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여행자의 고의. 단,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여행자의 가족 또는 친족의 고의. 단, 여행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게할 목적이 아니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여행자의 자살 행위, 범죄 행위, 투쟁 행위. 단,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여행자가 무면허, 또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단,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5) 여행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고 또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생긴 사고. 단,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6)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 단, 화재 소방 또는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
 - (7) 보상 대상품의 훼손. 단, 여행자 또는 대리인 보상 대상품의 관리자가 주의깊게 살펴도 발견하지 못한 훼손은 제외.
 - (8) 보상 대상품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색, 쥐가 먹음, 벌레 먹음등
 - (9) 단순한 외관적 손상이며, 보상 대상품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손해
 - (10) 액체류 보상 대상품의 유출. 단, 유출로 인한 다른 보상 대상품에 가해진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11) 보상 대상품의 분실
 - (12) 제 3 조 제 1 항 제 9 호에서 제 12 호까지의 해당되는 사유

2. 당사는, 일본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에 있어서, 전 항의 규정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지진, 화산 폭발 또는 해일.
- (2) 앞 항목에 수반하여 생긴 사고 또는 질서 혼란으로 인한 사고.

제 17 조 2 항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2)

당사는 여행자가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될때
- (2) 반사회적 세력에게 자금등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등 관여가 인정될때.
-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히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될때.
- (4) 법인의 경우, 반사회적 세력의 지배하 또는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가 인정될때.
- (5) 그의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관계라고 인정될때.

제 18 조

(보상 대상품 및 범위)

1. 보상 대상품은 여행자가 기획여행 참가중 소지한 신변에 관련된 휴대품에 한정합니다.

2. 전 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호 중 해당 사항은 보상 대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현금, 수표, 그의 유가 증권, 수입인지, 우표, 기타 유사품
- (2)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기타 유사품
- (3) 원고본,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유사품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CD ROM, 광디스크등 정보기기 (컴퓨터 및 단말 장치등 주변기기)로 직접 처리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된 것 포함)
- (4) 선박 (요트, 모터보트 및 보트 포함) 및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기타 부속품
- (5) 등산 장비, 탐험 장비, 기타 유사품
- (6) 의치 (틀니), 의수 및 의족, 콘택트 렌즈, 기타 유사품
- (7) 동물 및 식물
- (8) 그의 사전에 당사가 지정한 물품

제 19 조

(손해액 및 손해 배상금의 지급액)

1. 당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손해 금액(이하 「손해액」 이라한다)은, 그 손해를 입은 지역 및 일시를 기준으로 한 보상 대상품의 가격 또는 보상 대상품을 손해전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비용 및 다음 조 제 3 항에 규정된 비용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보상 대상품은 한개 또는 한세트의 손해액이 10 만엔을 초과할 경우, 당사는 손해액을 10 만엔으로 간주하며 전 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당사가 지불해야할 손해배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 인당 1 건의 기획여행에 15 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단, 손해액이 여행자 1 인당 1 건의 사고에 있어서 3 천엔을 넘지 않을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손해 방지)

1. 여행자는 보상 대상품에 제 16 조에 규정하는 손해 발생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 (2) 손해의 정도,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및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보상 대상품의 보험 계약의 유무를 사실대로 당사에 통지할 것.
 - (3) 여행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을 경우는 그 권리 행사에 필요한 수속을 밟을 것.
2. 당사는 여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 항 제 1 호를 위반했을 경우, 예방 및 경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동 항 제 2 호를 위반했을 시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항 제 3 호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에 의해 보상받을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합니다.
3.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 (1)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하는 손해 예방 및 경감에 당사가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한 비용.
 - (2)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수속에 필요한 비용.

제 21 조

(손해 배상금 청구)

1. 여행자는 손해 배상금 신청시에, 당사 소정의 손해 배상금 청구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경찰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 3 자의 사고 증명서.
 - (2) 보상 대상품의 손해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 (3) 그외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2. 여행자가 전 항의 규정을 위반 또는 고의적인 제출 서류 미비 및 조작했을때는 (제 3 자에게 지시한 경우도 해당) 당사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16 조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사가 지불해야할 손해배상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23 조

(대위 변제)

당사가 지불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손해중, 여행자의 제 3 자에게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불한 손해 보상금 액수의 한도 내에서 당사에 이전됩니다.

별표 제 1 (제 5 조 제 1 호 관련)

산악 등반(피켈, 아이젠, 자일, 햄머 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경우) 루지 봅슬레이,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 동력기 (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 라이트기 등) 탑승, 자이로 플레인 탑승, 기타 유사 위험한 운동.

별표 제 2 (제 7 조 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 관련)

1. 눈의 장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4) 한 눈의 시야장애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5%
2. 귀의 장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3. 코의 장애	
코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35%
(3)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5%
(4) 치아에 5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 (얼굴에 직경 2cm 의 흉터, 길이 3cm 의 선상 흉터를 말함)를 남긴 때	3%
6. 척추(등뼈)의 장애	
(1)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 또는 현저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15%
7. 팔의 장애 (손목 이상) , 다리의 장애 (발목 이상)	
(1) 한 팔 또는 한 다리를 잃었을 때	60%
(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 관절 중 둘 또는 셋의 관절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3)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 관절 중 한 관절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5%
8. 손가락의 장애	
(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관절이상 잃었을 때	20%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5%
(3) 엄지 손가락 이외의 한 손가락을 제 2 지관절 이상 잃었을 때	8%
(4) 엄지 손가락 이외의 한 손가락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
9. 발가락의 장애	
(1) 한 다리의 첫째 발가락을 지관절(근위지관절)이상 잃었을 때	10%
(2)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3) 첫째 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을 제 2 지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5%
(4) 첫째 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
10. 기타 신체에 뚜렷한 장애에 의해 생명과 직결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100%
<p>주) 제 7 호, 제 8 호 및 제 9 호의 규정중 「이상」 이란 해당 관절에서 심장에 가까운 쪽을 말합니다.</p>	

별표 제 3 (제 8 조 제 2 항 관련)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상태.
2.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잃은 상태.
3. 두 귀의 청력을 잃은 상태.

4. 양 손의 손가락 지관절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상태.
6.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주로 섭식, 세면등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7. 신경계·정신행동 장애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주로 섭식, 세면등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8. 기타 상기 부위의 합병 장애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주로 섭식, 세면등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주)

제 4 호의 규정중 「이상」 이란 해당 관절에서 심장에 가까운 쪽을 말합니다.